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뇌종양

직업성 암 ⑦

- 대법원 제1부 1995. 6. 29. 판결, 95누3930 상고기각
-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2. 10. 선고, 94구2909 판결

판결요지

뇌종양은 성질상 업무상의 과로 내지 화학물질에 피폭으로 발병한다고는 쉽게 추단되지 아니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뇌종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 판결이유

원심은 원고가 입은 재해에 대한 당초의 상병명인 경련성 뇌경색 및 뇌좌상은 소위 문진, 간진에 의한 임상적인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한달여 뒤의 상병명인 뇌종양은 소위 확진에 의한 최종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당초의 상병명인 경련성 뇌경색 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재해에 대한 정확한 상병명은 뇌종양으로 봄이 타당하며, 여기에 뇌종양은 성질상 업무상의 과로 내지 화학물

질에 피폭으로 발병한다고는 쉽게 추단되지 아니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뇌종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